

왔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면에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결국 NPT의 연장이 유기한이나 무기한이나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전력생산의 약 1/2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로써도 NPT 연장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제 무기한 연장이 우리의 원자력 평화이용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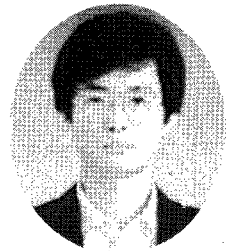
본 글은 NPT의 현황과 주요한 문제점을 잘 정리해 놓은 일본의 「국제문제」誌 1993년 4월호 「핵무기비확산 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글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核武器非擴散 現況과 課題

요으로 2년 후인 1995년 4월부터 5월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원자력계의 커다란 관심사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유기한 연장할 것인가 또는 무기한 연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 이 NPT 연장회의는 NPT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써, 동 조약이 발효된 1970년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그 연장문제를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NPT 연장문제에 대하여 원자력계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NPT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이 병 옥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세계평화의 새로운 위협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과 옛 소련간의 대폭적인 핵군축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최대 과제였던 이데올로기에 의한 핵전쟁 발발 위험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제거된 상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보다 평화적 상황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반면 걸프전쟁이 상징하는 바와 같은 지역적 분쟁의 빈발 및 옛 소련의 붕괴와 같은 종래의 국가체제 변경 등을 볼 때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의혹,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관한 불명확한 태도, 옛 소련의 붕괴에 따른 핵무기 관리의 허술함 등 핵무기 확산의 위험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종식에 의하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1월31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명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기술하면서 핵확산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글에서는 핵비확산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핵비

확산 체제의 중심은 1968년에 서명되고 1970년에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이며, 그밖에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조약이 있다. 또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IAEA가 실시하는 안전조치 또는 핵공급국간에 합의된 수출통제 등이 있다.

한편 NPT가 발효한 지 25년 후가 되는 1995년에는 동 조약의 연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거기에서는 조약이 무기한의 효력을 가질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지만, 그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결의로 행해질 것이다. 이 결정은 핵무기 비확산체제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그 회의의 개최에 관심을 돌려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NPT의 보편화와 준수

현재 150개국 이상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군축 관련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참가국을 가지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몇몇 중요한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아직도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위험한 국가가 있으며, 게다가 조약당사국이면서도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국가가 있다.

프랑스와 중국

프랑스는 1960년, 중국은 1964

년에 각각 최초의 핵폭발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소련, 영국보다 늦게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들 양국은 NPT 규정상 핵보유국으로서의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배체제를 혐오하여 이 조약에의 참가를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에 따라 중국은 1992년 3월, 프랑스는 1992년 8월에 각각 NPT를 비준하고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양국의 참가는 우선 다른 비핵무기국에 대한 핵공급시 핵비확산의 측면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양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동 조약 제6조에서 규정한 핵군축 교섭의무와 관련하여 영국과 함께 핵군축 교섭에 참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금지(CTB)의 해결에는 중국과 프랑스의 참가가 불가결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화국은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핵무기 개발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으나,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정세 개선과 국내 민주화 등을 배경으로 1991년 7월 NPT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9월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후 전면적 안전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시기에 남아프리카에 인접한 제국(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이)도 동 조약에

가입하였다.

앞으로 남아프리카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남아프리카의 조약참가는 아프리카의 지역상황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써 1960년 이래 추구되어 온 아프리카 비핵지대 창설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은 NPT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동조약에의 참가를 거부하여 왔고, 군사정권 하에서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왔으나 1990년 2월 핵무기개발을 정식으로 포기하였고,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상호사찰 및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를 설치한 틀라텔롤코(Tlatelolco) 조약에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양국은 1991년 12월 ABACCI(아르헨티나-브라질 핵물질계량관리기관) 및 IAEA간의 협정에 의하여 IAEA의 전면적 안전조치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따라 칠레도 틀라텔롤코조약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들 3국의 가입을 조건으로 조약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틀라텔롤코조약에 가입한다면 NPT 체제는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는 1974년 「평화목적 핵폭발」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나, 그

후 핵무기개발을 공식적으로는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도는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미 몇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도 조약가입을 거부한 채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미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인도의 패배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실시 및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패배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실시가 양국간 핵무기 개발의 기본적 동기로써, 서남아시아의 핵무기 비확산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양국은 상호의 핵시설을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것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비확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양국이 NPT에 가입할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의 상황을 서서히 개선하기 위한 신뢰조성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국제연합의 노력 또는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인도에 대한 신뢰조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60년대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대적인 아랍제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는 것은 중동정세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한다. 걸프전쟁후 미·소는 「중동 비핵무기/비화학무기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5월 부시 미대통령의 주도로 5대국의 중동 무기 이전 억제 논의가 개시되었다. 또한 1991년 10월 이후 중동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호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이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지대 설치로 진전되는 것이 기대된다.

1993년 1월 13일 화학무기금지조약의 서명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30여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대다수 아랍제국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화학무기금지조약에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중동평화라는 전체 틀속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라크

1969년 NPT 당사국이 된 이라크는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IAEA의 사찰을 받아왔다. 1981년 6월 완성 직전의 이라크 원자력발전소를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하였을 때, IAEA는 안전조치에 의하여 이라크가 핵무

북한의 핵위협

북한은 1985년에 NPT를 비준 하였음에도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거부하여 왔다. 최근 수년간 북한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존재가 판명되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이 전면적 안전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 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나 냉전의 종식 등을 계기로 미국은 1991년 9월 전 세계적인 지상배치 전술핵무기의 철거를 발표하였다.

전술핵무기의 철거가 확인된 후인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였고

핵무기의 실험, 생산, 수령, 소유, 저장, 배치 및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소유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의 검증을 위하여 상호사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후 1992년 1월 북한은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사찰에 관한 교섭은 암초에 부딪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IAEA의 특별 사찰의 요구, 그에 대한 북한의 NPT 탈퇴성명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직접 사찰과 함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걸프전쟁 종결 후 유엔 안보리 결의 687(1991)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던 시설에서 이라크가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여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케이스가 시사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더라도 안전조치 만으로는 핵무기개발에 착수한 당사국의 조약 규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IAEA의 안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례를 들어 IAEA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전조치협정에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원용할 때 증거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별사찰은 해당 국가가 합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라크의 핵무기개발에는 선진기술제국으로부터 많은 주요 부품 또는 기술이 유입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옛 소련

냉전의 종식은 소련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전술핵무기는 부시 미대통령의 주도에 따라 러시아 연방 내부로 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략핵무기는 러시아 연방 이외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각 공화국에 배치된 상태로 있다. 독립 초기 이들 공화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존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으나, 러시아와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대립, 안전보장 문제 및 자국의 핵무기를 거래대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 등에서 사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에는 러시아가 그 권리를 가지나 그 때에는 다른 세 공화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등 3국에 대한 취급이다. 1992년 5월 미국과 옛 소련 4개국 사이에 서명되었던 전략핵무기 감축조약(START-I)의 의정서에 의하여 이들 3국도 조약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이들 3국은 가능한한 빨리 핵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할 것과, 이들 3국은 조약이 실시되는 7년 이내에 모든 전략핵무기를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START-I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

탄은 NPT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

두번째의 문제는 이제까지 핵무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옛 소련의 붕괴에 따라 러시아 영내에 저장 또는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의 물리적 관리, 그 외에 폐기된 핵무기에서 추출된 핵분열성 물질의 관리가 충분한가의 여부에 대한 염려이다. 특히 군축조약의 실시에 의하여 대량의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플루토늄은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세번째 문제는 이제까지 핵무기개발 등에 종사해 왔던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문제이다. 이들이 제3세계의 국가에 고용되어 핵무기개발을 원조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EC 및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여 모스크바와 키에프에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옛 소련의 과학기술자를 그곳에 고용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동 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바람직한 것이나 그 운영문제와 센터의 설립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이와 같이 옛 소련의 붕괴로 발생한 사태는 핵무기확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최대의 핵무기 확산위험에 대하여 국제사회 전체

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핵군축

핵군축 그 자체는 핵무기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핵옵션을 포기시키기 위하여는 핵무기국이 일정한 군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약교섭 과정의 논의에서나, 5년마다 개최된 NPT 평가 회의에서도 명백하며 다수의 비핵무기국은 핵무기 비확산을 핵군축을 위한 제1보로 이해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소 및 미·러간에 대폭적인 핵군축이 합의되었으나 NPT 체제의 강화를 위하여는 아직 몇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START 조약과 일방적 철거

9년에 걸친 교섭 끝에 1991년 7월 서명된 START-I 조약은 전략공격무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나 실체는 복잡한 계산에 따라 앞으로 7년간 현재보다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 서명되었으나 비준 전에 옛 소련이 붕괴하였기 때문에 1992년 5월에 조약 의정서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사이에 서명되어 이 5개국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되었고, 7년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START-I 조약이 발효하기 위하여는 이들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는 비준의 조건으로서 안전보장확보 및 경제원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러시아 및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2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기본 합의에 따라 제2차 전략무기 감축조약(START-II)이 1993년 1월 서명되었다. 이것은 미·러의 전략공격무기를 2003년까지 현재보다 약 3분의 2를 감축한 3000-3500기로 하고 대륙간 단타도 미사일(ICBM)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미·러 양국간의 조약이나 START-I 조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 있어서 엘친의 지도력 저하와, 동 조약이 러시아로서는 매우 불리하다는 보수파의 반대로 인하여 비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술핵무기는 1991년 8월 옛 소련의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미국은 전세계의 지상배치 핵무기의 철거와, 해상함정과 공격형 잠수함에서 전술핵무기를 철거할 것을 결정하였고, 옛 소련도 그에 호응하여 전술핵무기를 러시아로 철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냉전의 종식에 따라 그러한 배치

의 필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전술핵무기가 타국 또는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탈취될 위험성도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전략무기의 대폭적 감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전술무기도 철거되었고 핵군축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개의 조약이 곧 발효할지의 문제와 실령 발효하더라도 합의내용이 잘 이행될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전술무기도 미·러 내로 철거되었으나 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술무기의 철거는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이지만, 폐기문제는 미·러 간에 계약을 맺어 상호관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국, 프랑스, 중국을 포함한 5개국이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포괄적 핵실험금지

1990년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의 최대 대립은 CTB를 둘러싼 문제였다. 다수의 비핵무기국은 CTB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수의 비핵무기국은 CTB를 NPT연장과 연결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CTB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옛 소련은 1985년 이후 여러번 핵실험의 일시정지를 발표하였으며 프랑스도 1992년 4월 핵실험의 일시정지를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CTB를 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랐으나 하원이 1년간의 일시정지를 승인한 후, 1992년 8월 상원이 9개월의 일시정지, 그후 3년간 15회의 실험을 행한 후에는 전면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부시 미대통령은 의회의 압력 및 선거를 고려하여 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다른 핵무기국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단서가 첨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및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교섭을 조기에 개시하도록 핵무기국은 노력해야 한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사회는 핵무기가 정치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 세계로 이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확산방지에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것이다.

비핵무기국의 안전보장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가장 큰 동기는 자국의 안전보장 강화이다. 비핵무기국에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비핵무기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핵무기 사용금지

NPT 당사국인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개념은 조약 교섭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핵무기보유 5개국은 1978년과 1982년의 유엔 특별총회에서 일정한 조건부로 이를 위한 선언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법적 의무와는 관계없는 아주 불충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언을 기초로 국제조약을 작성함으로써 비핵무기국의 안전보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핵무기국은 선제 불사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선 냉전구조를 기초로 한 확대역지는 동서관계의 개선, 동구의 민주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에 따라 그 존재 이유가 감소하였다. 그 다음 재래무기에 의한 우위를 핵무기로 보완할 필요도 유럽재래 전력감소조약(CFE)에 의하여 감소되었다. 또한 전술핵무기가 미·소에 의하여 철거되었다. 이와 같이 선제사용의 금지에 반대할 이론적, 물리적 이유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선제 불사용의 교섭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이다.

핵피해국에 대한 원조

핵공격 또는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원조

를 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서명시에 안보리 결의로서 부여되고 있으나, 중국이 유엔의 대표권을 얻은 이후 의미가 없어졌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잠재적 핵무기국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 안전보장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엔의 안전보장기능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유엔헌장 제7장에 규정된 유엔의 행동으로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엄격히 유엔의 관리하에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각국에 적극적 안전보장을 인정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핵무기 소유의 정치적 의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지대의 설치

비핵지대는 「핵무기의 완전한 부존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핵비확산 의무 이외에 배치금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NPT를 보완하는 지역적 접근임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핵무기의 사용 금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비핵무기국의 주도에 의하여 그 안전보장을 높이는 것이다. 비핵지대는 이미 중남미 및 남태평양에 설치되어 있으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설치를 촉진해야 한다.

우선 남아프리카 및 그 주변국

이 NPT에 가입한 아프리카는 1960년대부터 주창되어 왔던 아프리카 비핵지대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련군의 베트남 철수, 클린턴의 미군기지의 폐쇄, 캄보디아 내전의 종식 등 주변정세가 개선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비핵지대의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냉전종식에 따라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비핵화 선언을 채택한 한반도에 있어서 양국은 정식으로 비핵지대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조치의 강화

IAEA의 안전조치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687에 따라 유엔 특별위원회가 IAEA협력을 얻어 행한 사찰을 통하여 이라크가 핵무기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NPT 당사국인 이라크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여 IAEA 안전조치 하에 둘 의무가 있었으나, 이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핵무기 개발을 실시하여 왔다. 이 사건으로 IAEA 사찰의 약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AEA 이사회는 1992년 2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는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국

내에서 특별사찰을 행할 수 있는 IAEA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안전조치협정 제73조는 해당 정부가 제공한 정보 및 일반사찰에서 얻어진 정보가 IAEA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7조는 특별사찰을 행하는 경우 양자는 협의를 거쳐 해당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은 정보 및 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사찰의 실시에는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IAEA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국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IAEA 이사회가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보리가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사찰을 포함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사찰의 실시에 있어서는 우선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IAEA자체는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국이 정찰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IAEA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밖에 장기적으로는 국제위성기구 등의 설립을 목표로 한 노력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IAEA는 그자체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구가 아니므로 특

핵공급그룹 바르샤바 채택 4개 문서(93. 4. 3)

첫째, 지침에서 핵확산이라는 목적을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이라는 목적보다도 우선할 것을 명백히 하였고, 수출허가절차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대국이 NPT 당사국일 것과 수령후의 최종 사용목적을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핵공급 그룹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품목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65개 품목이 열거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이중 사용품목이며 그밖에 직접 사용되는 핵무기 구성물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양해각서이며 여기에서는 수출승인 거부시 공급국 그룹

의 다른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거부는 3년간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어떤 나라에 공급이 거부된 국가가 곧장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받을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또한 정보교환, 정기적 협의 및 비공식적 사무국도 정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그룹의 조직화가 이루어 졌다.

넷째, 전면적 안전조치에 관한 성명에서는 이중 사용품목을 포함하기 이전의 품목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 활동의 모든 핵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IAEA의 전면적 안전조치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수령국에 대하여는 수출하지 않도록 합의되었다.

별사찰의 실시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핵수출 통제

1975년 이후 핵공급국 그룹(당초 7개국)은 핵수출에 관련한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에 관한 지침의 채택을 통하여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왔다. 걸프전쟁 후 이라크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의 조치로써는 불충분하다는 것과 또한

냉전의 종식에 따라 COCOM규제가 완화된 점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종래의 핵수출 통제제도는 ① 프랑스, 독일, 소련 등은 비확산 이익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킨 점이 있었으며, ② 수출입 허가절차가 통일되지 않았고, ③ 수출품목 중 군사적으로나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사용품목은 규제대상품목으로 되지 않았으며, ④ 이행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지도 않고 위반에 대한 제

제도 규정하지 않는 등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1992년 2월 27개국이 회의에 참여하여 이중사용품목의 규제에 합의함과 동시에 몇몇 작업단이 구체적으로 문제의 심의를 개시하였다. 1992년 4월3일 바르샤바에서 핵공급국 그룹은 4개의 문서를 채택하였다.

최근 핵공급국 그룹의 합의에 의하여 이행이나 제재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규제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라크와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출관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도가 핵무기 비확산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반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평화적인 기술이전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북문제를 야기한다는 염려가 개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강화 및 촉진에 관하여 냉전종식은 큰 희망을 부여하였으며 미·소 및 미·러간에 대폭적인 핵군축 합의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내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며 핵무기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증대하고 있다. 핵군축과 핵비확산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양측면에서 보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